영등포구의회 제20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討報告書

【김 재 진 의원 대표 발의】



2018. 3. 5.

社會建設委員會 專門委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討報告書

1. 경 과

의안 제351호로 2018년 2월 1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2일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수도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수돗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공중화장실 비상알림장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의 사전 예방 및 각종 비상상황에 적극 대처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신설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해야 하고 미설치시 이행을 명할 수 있음(안 제5조제6호~제7호)
- 비상알림장치 또는 유사한 안전장치 설치(안 제5조제8호)

- 나.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상위법 일치(안 제7조제1항)
- 다.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미설치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 제18조제2항)
- 라.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4. 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수도법」
-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 다. 입법예고(2018. 2. 9. ~ 2. 14.):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2011.11.14.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화 장실 설치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공중화장실 이용자에게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범죄예방 및 구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공중화장실내 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안전장치를 설치토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임.

- O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5조에서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내용을 추가하고자 제6호 및 제7호를 신설하여「수도법」제15조제2항 규정을 반영, 공중화장실내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의무 규정을 두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게 규정 하였으며

제8호를 신설하여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공중화장실내에 비상알림 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7조에서는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내용을 반영, 정비하였으며
- 안 제18조제2항을 신설하여 동 조례안 제5조제6호 및 제7호 신설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었으며
- 안 별표에서는 과태료 근거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 하였고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및 용어 등을 수정, 정비함.

○ 2018년 1월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총 40개소로 대부분 취약지역 및 한적한 공원 등 사각지대에 설치되어 있어 그동안 이곳을 이용하는 구민 특히 여성 및 어린이들은 공중화장실 이용에 불안을 느끼고 있음.

※ 영등포구 관내 공중화장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청소과 관리	푸른녹지과 관리	민간개방화장실	
공중화장실	80	16	24	44	

○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내에서 범죄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1) 범행의 종류도 강도 등 강력 범죄 뿐 아니라 성추행, 몰래카메라 등 혐오성 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각 지자체와 경찰에서는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을 위하여 폐쇄회로 설치, 경찰서와 연결된 비상벨 설치, 남녀 화장실 분리 설치 등 시책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음.

¹⁾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 최근 3년간 공중화장실 범죄방생건수

^{※ 2015}년 1.795건 2016년 1.981건 2017년 2.050건

※ 2017년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 (단위: 건)

죄종	강력범죄 (살인강도;강간등)	절도	폭력 범죄	지능 범죄	풍속 범죄	기타	합계
건수	169	439	232	379	654	177	2,050

- 우리구에서도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하여 공중화장실에 비상알림장치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행함으로써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각종 범죄예방 및 사건 사고 등 응급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수도법」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 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절수 효과에 따른 예산절감도 기대됨.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수도법」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 련 법 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0.16., 2014.7.14.>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 ②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법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 표] <개정 2014.11.19.>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

1.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 이상이 되도록 설 치하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 고, 대변기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4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10개(남자용 2개, 여자용 8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대변기 칸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85센티미터 이상, 긴 변이 115센티미터 이상(서양식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1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3. 소변기는 1인의 점용폭을 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칸막이와 선반을 설치할 수 있다.
- 4.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세정장치, 휴지걸이, 옷걸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6.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와 변기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인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 8.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및 세면기 등의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 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10. 급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 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1. 동양식 변기와 서양식 변기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 12. 여자용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 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13.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 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14.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는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 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5. 어린이용 대변기를 서양식 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전용 변기를 설치하되, 일반인용 변기를 이용하여 어린이겸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변기 좌석 덮개 안쪽에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별도의 어린이전용 변기 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 16. 어린이용 소변기를 벽걸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변기의 벽체 배수구를 바닥 면에서 20센티미터 이상 3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 17. 어린이용 세면대는 바닥 면에서 세면대 상단까지의 높이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거나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대를 설치여야 한다.
- 18.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는 화장실 이용 객의 통행 및 왕래에 불편이 없는 규모로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별로 각각 1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 안에 남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여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 가.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 나.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
 -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 라.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비고

- 1. 시·군·구는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외에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2. 위 표에서 "동양식 변기"라 함은 쪼그려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하고, "서양식 변기"라 함은 걸터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한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11.3.31.>

제21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6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 제11조제2항에 따른 표지 부착 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
- 3.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4.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③ 제14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5.30.]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u>구청장은</u>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u>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u> <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

제87조(과태료)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 2013.12.30., 2016.1.27.>
-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u>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u> 지 아니한 자
- 3의2. 제16조를 위반하여 물 사용기기에 물 사용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3의3. 제21조제6항(제50조·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
-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 2013.12.30., 2016.1.27.>
- 1. 제7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u>구청</u> 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수도법 시행령』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6.7.12.> [전문개정 2012.5.14.]